



본란의 기사는 본회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회 國際部 (TEL : 553-0941/7)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CDP 확정 판정

확정 덤핑 마진율은 일본의 경우 1.54%~27.8%로, 한국업체는 10.73%~26.11%로 나타났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Toshiba와 Sharp 에게는 각각 31%와 32%로 높은 마진율을 책정했음.

Marantz Corp., Lux Corp., Alpine Electronics Co., 등 덤핑마진을 2% 미만의 일본업체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확정관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집행위는 '90년 1월 16일자 관보에 다음과 같이 CDP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음.

- SPEC
 - Stand-alone Type
 - External Dimension 216×45×150mm
 - 10개 CDP 장착 가능
 - Rack System에 탑재될 경우 Rack System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자체 Power Supply 와 Command기능 갖춘 것 (AC Main Supply 110/120/220/240V 사용, DC 12V 이하 사용은 제외)
- 덤핑관세율 (한국 및 일본업체)

2. 일본산 전동타자기, A/D 규제 종료 임박

집행위는 일본산 전동타자기에 부과되었던 덤핑 관세가 재심 신청이 없을 경우 향후 6개월 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발표했음.

1985년 결정되었던 일제 전동타자기 Case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산 가전제품이나 사무기기 제품

덤핑 관세율

국별	업 체 명	확정 A/D	예비 A/D
일본	Nippon Columbia Co. Ltd (Denon) Tokyo	17.0	17.5
	* Funai Electric Trading Co. Ltd. Osaka	8.9	8.4
	* Kenwood Corporation, Tokyo	23.3	19.3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Osaka	26.3	33.9
	Onkyo Corporation, Osaka	8.3	8.5
	Pioneer Electric Corporation, Tokyo	26.3	28.8
	Sanyo Electric Co. Ltd, Osaka	26.5	27.8
	Sony Corporation, Tokyo	10.1	15.9
	* Teac Corporation, Tokyo	12.7	6.4
	Victor Company of Japan (JVC), Tokyo	17.9	20.9
	* Nippon Gakki Corporation, (Yamaha) Hamamatsu (Yamaha)	27.5	23.7
	Sharp Corporation, Osaka	32.0	33.9
	Toshiba Corporation, Tokyo	31.0	33.9
	Chou-Denki Co. Ltd, Saitama	17.8	33.9
한국	인켈	14.4	20.1
	금성사 및 기타	26.1	32.5
	삼성전자	10.7	23.0
	해태전자	19.4	21.3

- 수출업체와 생산업체가 상이할 경우 생산업체율에 따름.
 - LUX, ALPINE, MARANTZ에는 관세 부과하지 않음.
 ※ *표시 업체 : 예비관정보다 고율의 확정 반덤핑 관세율 결정.

에 대한 반덤핑 Case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그동안 집행위는 전동타자기 및 기타 다른 초기의 Case들로부터 많은 정책과 기법들을 발전시켜 왔음.

동 Case는 이러한 일련의 Case 중 5년 만기후

심 대상이 되는 첫번째 Case로서 EC 산업이 심을 신청할지 관심이 집중되나 그동안 전동타기 수요의 둔화와 함께 현재 많은 일본 업체들이 EC내 공장을 갖게 되었음이 주지되어야 할 것

재심은 반덤핑 조치의 만료가 다시금 산업피해에 그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내한 서면 청구서가 제출될 경우 개시되어 질 수 있으며, 이때 집행위가 재심을 하려 한다면 그러 F 취지의 결정이 관보에 게재될 것이며 기존 규정은 재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연장될 것임.

GATT A/D Code 하에서 A/D 관세는 덤핑에 의한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는 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조사당국은 자진해서 또는 관계업계의 요청에 의해 관세의 계속성 여부를 재심토록 되어 있음.

집행위는 GATT Code에 따라 재심을 요청해는 업체가 없으며 집행위도 재심이 필요하다고 믿는 만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반덤핑 조치가 계속 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A/D 관세가 이유없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84년 집행위는 반덤핑 조치가 지속될 필요성이 나타나지 않는 한 5년 만기후 반덤핑 관세의 자동 소멸을 보장하는 Sunset Provision(일시규정)을 도입했었음.

EC는 GATT측에도 A/D Code내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삽입하도록 제안했음.

3. EC, 일본산 DRAM의 Undertaking 제의 수락

지난 3년간 유럽시장에 유통되는 일본산 칩에 대한 덤핑 조사 끝에 집행위는 EC로 수입되는 일본산 DRAM에 대해 생산비에 9.5%를 합산한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한 일본 업체들의 Undertaking 가격 제의를 수락했음.

이는 지난 여름 집행위와 11개 일본 DRAM 업체들간 최저 수출가격에 관한 원칙에 합의한 것에 따르는 것으로, 5년 기한인 동협정은 이달말 이전에 효력을 갖게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1986년에 합의되었던 미·일간의 유사한 협정이 만료

되는 1991년말에 다시 검토되어질 것임.

집행위는, 동협정이 EC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유럽 DRAM 생산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축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동 Undertaking 제의 수락은 EC의 칩소비 업체들이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몇몇 회원국에 의해 의문이 제기됐었음.

4. 일본, EC 반덤핑 정책 비난

일본은 GATT내의 우루과이 라운드(자유무역협상)에 제출할 제안서를 준비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EC의 반덤핑 제정의 남용을 비판하며,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수정안 채택을 요구하고 있음.

동보고서는 A/D Code가 보다 더 명확히 그리고 일관성을 갖도록 수정되어야 하며 관계업체(Associated Companies)의 정의와 피해산정의 기준 그리고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의 규정기준 등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동보고서는 분쟁 위원회(Dispute Panel) 결정전 3개월간의 조정기간을 요하는 현행 GATT의 분쟁 해결 과정의 단축과 점검이 제안되어 있음. 일본은 조정(Conciliation)이 자유재량으로 되어질 것과 GATT Panel 결정에 "Fast Track" 선택 권한(Option)을 원함.

5. 1992년을 대비한 한국의 투자증가

한국의 투자는 1988년말 4,100만불 상당의 64개 Projects에서 1989년 10월말 현재 4,900만불 상당의 69개 Projects로 증가되었으며 이들중 거의 반수가 제조업이며 특히 전자제품 조립분야의 투자임.

삼성, 금성, 대우 등 가진 3사는 11개의 전자제품 조립공장을 완공했거나 건설중에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도 그들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고 발표되었음.

이같은 투자는 시장통합시 EC내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활발히 진전되고 있음. 그러

나 이런 해외투자는 생산비의 증가와 저이윤 및 투자지원조건 악화 등 위험을 수반할 수 있음. EC로 수출되는 몇몇 한국 전자제품은 이미 A/D 관세나 수입쿼타 대상이 되고 있음.

6. 한국, 특정 공산품에 대해 90년도 일반관세 특혜대상에서 제외

집행위는 90년도 일반관세 특혜를 포함하는 최근 규정에서, 한국이 EC를 여타 교역국들과 차별을 계속하고, 지적 소유권 보호에서 EC에 대해 차별적 정책을 계속 취하는 한 일반관세 특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함을 표명했음.

특정상품에 대해 일반관세 (Common Customs Tariff)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관세 특혜는 1990년도에는 한국 제품에 적용되지 않을 것임. 한국은 1987년 처음으로 특혜에서 제외되었었음.

7. EC 의장국 재임기 동안 프랑스의 업적

6개월간 EC 의장국으로서 프랑스는 몇몇 분야에서 현저한 진전을 보인 반면 몇몇 분야에서

는 부진한 진전을 보인 상태에서 의장국 임기를 마감. 통화동맹에 대한 논의에서, 흑자는 그 추진력을 잃게 되었으며 EC 사회현상이 그모든 실질적 중요성을 상실할 정도로 희석되었다고들 생각하게 되었음.

성공적인 분야들로는, EC가 국가간 기업인수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합병 규정의 채택과 은행업에서의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방법을 명확히 제시한 제 2차 은행업 지침이 있음. 이 두가지 규정은 1989년 12월말 채택. 통신시장에서 또한 진전을 보였는데, 이는 통신시장 개방국과 비 개방국간의 넓은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채택된 자유화 규정이며 현재 EC는 내년 중반부터 첨단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그리고 1993년부터는 기초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유경쟁을 기대하고 있음.

기타 생명보험과 항공수송 그리고 육상수송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진전을 보였음.

유럽 단일시장 백서에 제시된 279개의 지침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백여개의 지침이 마져 채택되려면 2년정도 남았으며 이들 현안들은 에너지에서 보건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대부분 하위 순위들의 것이 남아 있지만 간접세 같은 첨예한 분야도 역시 남아 있음.

'90 서울국제무역박람회 개최 안내

- 명 칭 : '90 서울국제무역박람회
(Seoul International Trade Fair '90)
- 목 적 :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및 수출부진 타개, 수출산업의 국제화 촉진, 참가국간의 통상 증진 및 수입선 개발 기여
- 기 간 : 1990년 10월 30일~11월 5일
-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본관
- 참가업체 : 320개 업체
(국내 192개업체, 해외 128개 업체)
- 참가신청 : '90년 2월 1일~5월 30일
- 문 의 처 : 대한무역진흥공사 전시부
(무역센터 13층)
Tel : 551-4412/17